



의안번호	제88호
------	------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7. 10. 17.

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88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0. 17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, 동조례의 일부 조문이 중복되어 정비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협의회 운영시 불필요한 서류제출부담 해소를 위해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 조문 삭제(안 제10조제4항)
- 나.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과 심의사항 조문이 중복되어 정비 및 삭제(안 제14조, 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 - 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- 가) 예고기간 : 2017. 8. 24. ~ 9. 14. (20일이상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5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 - 6) 충청남도 소관 실과 : 충청남도 건축도시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”로, “이메일 등”은 “이메일,”로, “심의할 수 있으며, 대상·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”를 “심의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필요”를 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도시주택과장	강 문 구
	도시광고팀장	박 노 혁 (746-6241)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주민협의회 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,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0조(주민협의회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14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, 화상회의,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, 대상·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4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----- ----- 이메일, ----- ----- 심의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
<p>④·⑤ (생략)</p> <p>⑥ <u>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·방법·절차, 안건의 제출방법,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,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</u></p>	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<u>위원회의 운영에 필요----- ----- ----- -----.</u></p>

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(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

①·② (생략)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심의등을 위하여 이메일, 서면,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·전문가·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,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해당없음

2. 비용추계결과

해당없음

3. 작성자

도시주택과장 강 문 구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○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○ 「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4조의2(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)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(이하 “자율관리구역“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·크기·색깔,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6조(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)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“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·지상권자·임차권자(이하 “토지소유자등“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(이하 “자율관리협정“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

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(이하 “자율관리구역“이라 한다)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
2. 광고물등의 위치·모양·크기·색깔·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
3.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
4.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(이하 “주민협의회“라 한다)의 명칭·주소 및 그 대표자·위원의 성명·주소
5.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
6.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
7.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참고 2

다른 조례의 개정 이유

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(2016.1.19. 공포·시행)되어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됨.

「논산시 건축조례」 제22조제3항제12호에 규정되어 있는 야외흡연실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15호와 중복되어 조례에서 규율할 필요가 없음